

2016. 12. 05. 10:00

제248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7년도 출연금 출연 계획안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임 동 화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노인복지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다사·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

-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유입인구급증에 따른 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코자 함

○ 화원명곡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 기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으로 결정된 명곡 체육공원의 잔여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체육시설, 부대편의시설 등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개발 필요

○ 도동서원 주변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

- 3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과 문화재보호구역의 편입으로 인한 소유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달성 도동서원』(국가지정사적 제488호)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고,
- 매입 후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군 보건소 이전·신축

-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급격한 산업도시화 및 군민 30만 시대에 대비한 첨단 보건복지 행정체제 기반 구축 필요
-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고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주민들에 대한 쾌적하고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곤란
-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보건행정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판매까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달성군 농산물 상품화 및 농식품가공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 농산가공품 생산에 따른 품질규격화, 표준화, 관련 준수사항 등 소규모 가공사업장 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 지원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골자

○ 달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 위 치 :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 919-2
- 기 간 : 2013. 10. ~ 2018. 12.
- 면 적 : 대지 2,644m²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30m²

- 사 업 비 : 76억원 (특별교부세 10, 시비 7, 군비 59)
- 공사비 65, 용역비 4, 기타 7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

- 위 치 : 달성군 유가면 상리 410B/2L
- 기 간 : 2016. 3. ~ 2017. 1.
- 면 적 : 45,184m²
- 사 업 비 : 132억원(토지매입비 131, 기타 1)

○ 화원명곡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7번지 등 8필지
- 관련지번 : 18, 19, 20-1, 20-2, 21, 24-2, 28
- 면 적 : 6,783m²
- 시설내용 : 체육시설, 부대편의시설(주차장 등)
- 기 간 : 2016. 10. ~ 2017. 12.
- 사 업 비 : 19억원 (부지매입비 17, 시설비 2)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 도동서원 주변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4번지 등 21필지
- 기 간 : 2016. 3. ~ 2020. 12.
- 면 적 : 대지 5,991m², 건물 138.6m²
- 부지매입비 : 1,300백만원(토지 850, 건물 370, 기타 80)
- 시설내용 : 주차장 조성, 마을경관 정비, 서원문화관 건립 등

○ 군 보건소 이전·신축

- 위 치 : 현풍면 하리 253-2, 250-4번지
- 기 간 : 2015. 4. ~ 2018. 7.
- 면 적 : 4,826m²(군유지 4,704, 사유지 122)

- 매입부지 : 현풍면 하리 250-4번지(122m²)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건축면적 : 연면적10,383m² (보건소 6,620, 지하주차장 3,763)
- 사 업 비 : 259억원(국비 37, 군비 222)
 - 토지매입비 2, 공사비 234, 용역비 13, 장비비 10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961번지
- 기 간 : 2016. 3. ~ 2017. 12
- 면 적 : 1,544m²
- 건축규모 : 연면적 660m², 1층
- 주요시설 :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 저온저장고, 위생전실 등
- 사 업 비 : 21억원(사업비 15, 장비비 등 6)

- 붙 임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 득	계					9 (31)	72,679.22	47,233,917	9 (31)	72,679.22	47,233,917
	1.매입	토지				4 (31)	58,080	14,157,988	4 (31)	58,080	14,157,988
		건물				2	1,126.22	75,929	2	1,126.22	75,929
	2.교환										
	3.기타	토지									
		건물				3	13,473	33,000,000	3	13,473	33,000,000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건물)	답	체	다사읍	매곡리	919-1	2,430 (연면적)	2,430 (연면적)	7,600,000,000 (사업비)	2018.	노인복지관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전	체	다사읍	매곡리	919-2								
2	체	체	유가면	상리	410B/2L	45,184	45,184	13,103,360,000	2017.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	LH공사	
3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7	208	208	20,675,200	2017	회원명곡 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화원읍 천내리 884	성순옥	
4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8	1,243	1,243	123,554,200			수성구 황금동 368	박영숙	
5	전	전	화원읍	명곡리	19	1,124	1,124	111,725,600			화원읍 천내리 766	김종렬	
6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972	972	156,103,200			화원읍 천내리 783	김윤희	
7	목	목	화원읍	명곡리	20-2	754	754	74,193,600					
8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1	175	175	14,875,000					
9	답	답	화원읍	명곡리	24-2	555	555	47,175,000					
10	전	전	화원읍	명곡리	28	1,752	1,752	148,920,000					
11 (건물)	대	대	화원읍	명곡리	20-1 20-2	987.6	987.62	3,029,160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2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0-2	34	34	1,689,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길동	
13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1-1	71	71	3,528,700			구지면 도동리 171	김태욱	
14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2-1	52	52	2,584,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2-2	36	36	1,789,2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16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	155	155	4,340,0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7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3-1	176	176	8,747,200			구지면 도동리 56	김영식	
18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3-2	244	244	12,126,8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19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4-1	27	27	1,341,9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0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5-1	154	154	7,653,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한용	
2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5-2	267	267	13,269,900			달서구 이곡동 1332	김병의 외2	
22	도	도	구지면	도동리	46-1	166	166	8,250,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3	전	전	구지면	도동리	46-2	96	96	4,771,2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24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314	314	25,496,800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5	전	전	구지면	도동리	54-1	979	979	48,656,3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26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5	165	165	11,484,000			구지면 도동리 56	이재철	
27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7	1,471	1,471	102,675,8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8	임	임	구지면	도동리	58	602	602	927,08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29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463	463	32,965,60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0	임	임	구지면	도동리	60	347	347	405,990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화	
31	전	전	구지면	도동리	71	107	107	8,688,4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희석	
32	대	대	구지면	도동리	71-3	65	65	2,138,500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동	
33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 54-1 71	81.4 (연면적)	81.4 (연면적)	38,500,000 (개별주택가격)			구지면 도동리 54	김희석	
34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4-1 71	32 (연면적)	32 (연면적)				구지면 도동리 69	김태우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35 (건물)	대	대	구지면	도동리	59	25.2	25.2	34,400,000 (개별주택가격)	2017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수성구 신천동로 84길 47	김윤희	
36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122	122	53,875,200	2017	보건소 이전 · 신축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 210	윤점준	
37 (건물)	대	대	현풍면	하리	253-2	10,383 (연면적)	10,383 (연면적)	23,400,000,000 (공사비)	2018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답	답	현풍면	하리	250-4								
38 (건물)	대	대	옥포면	교항리	2961	660 (연면적)	660 (연면적)	2,100,000,000 (사업비)	2017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위 치 도

【달성군 제2 노인복지관 건립】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 919-2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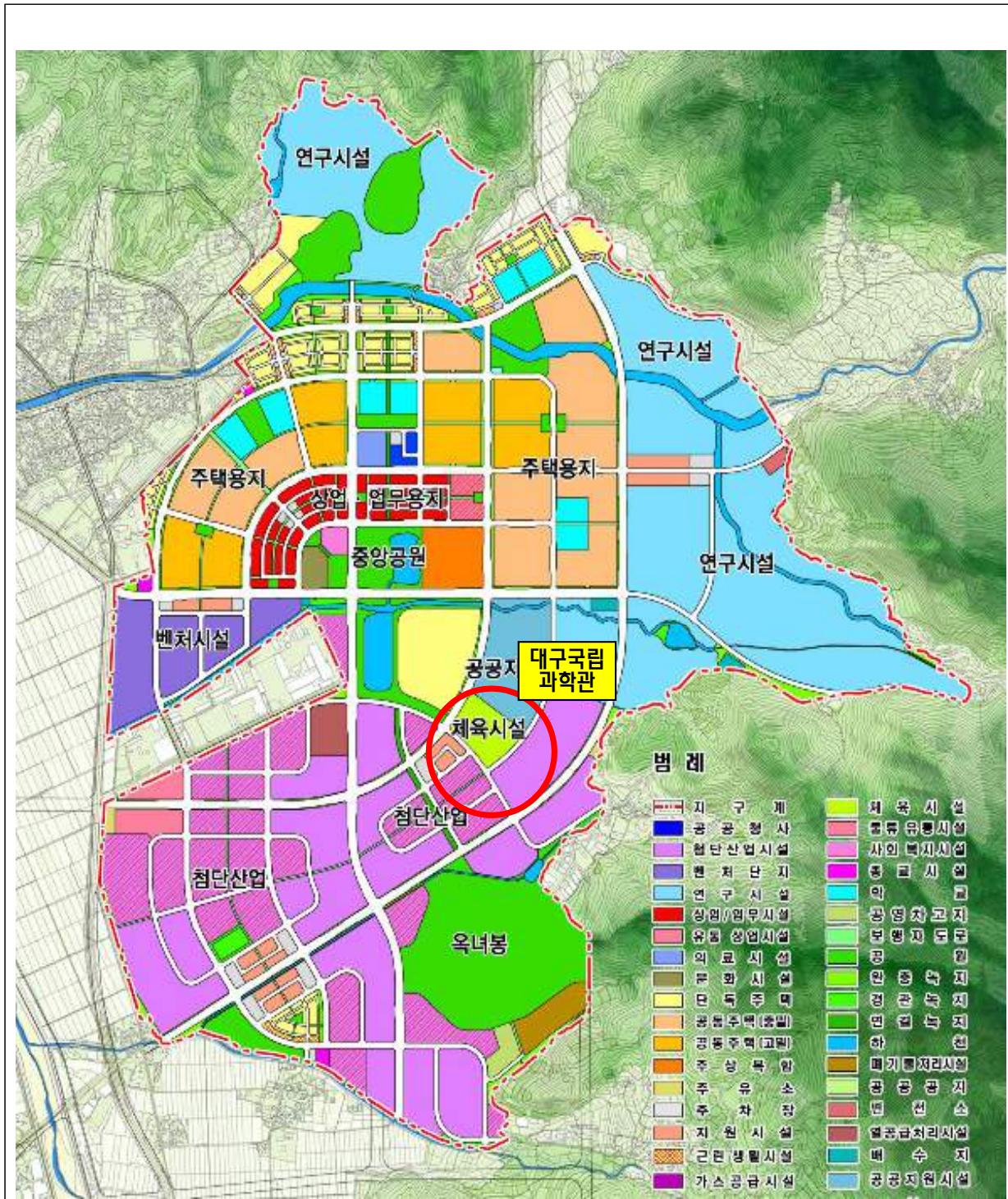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9-1, 919-2



위 치 도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410B/2L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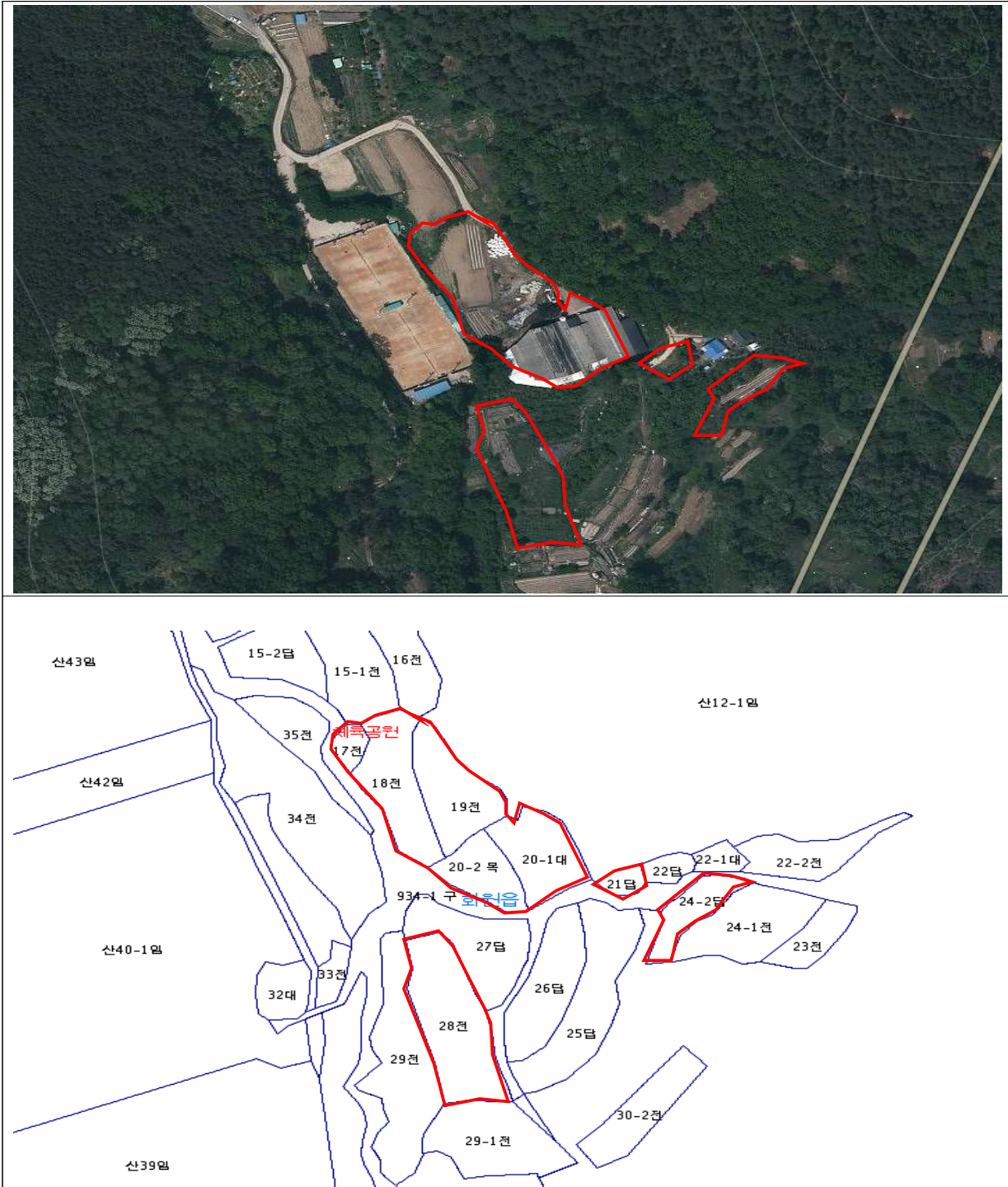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상리 410B/2L



위 치 도

【화원명곡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7번지 등 8필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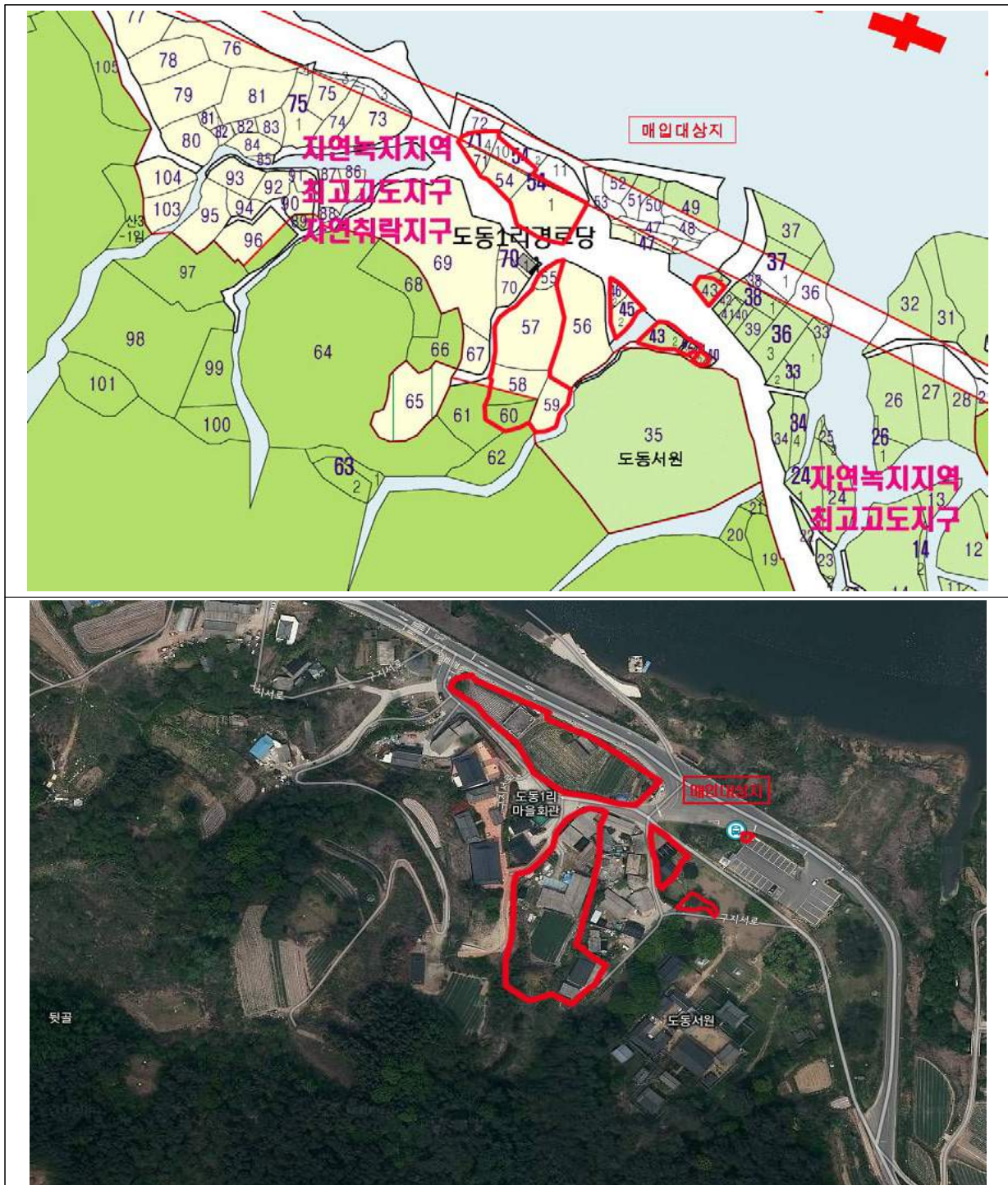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7번지 등 8필지



위 치 도

【도동서원 주변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4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4번지 일원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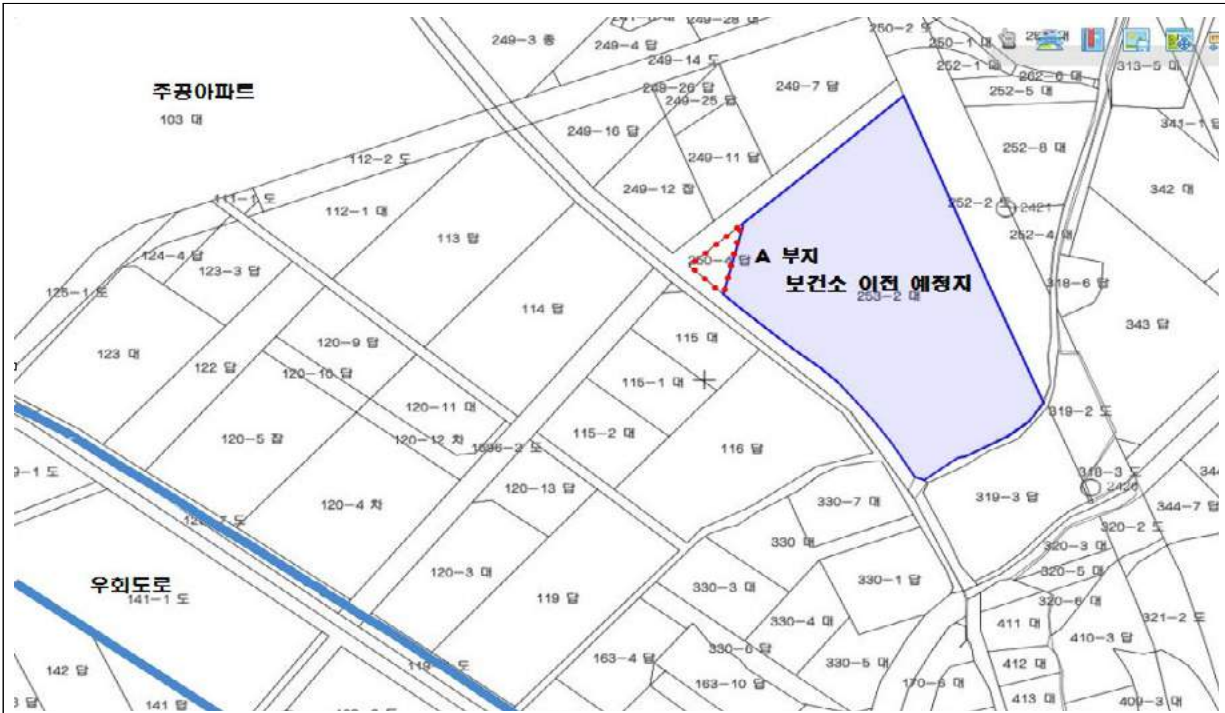
□ 대상문화재 및 주변 현황 : 『달성 도동서원』 (사적 제488호)



위 치 도

【군 보건소 이전 · 신축】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 250-4번지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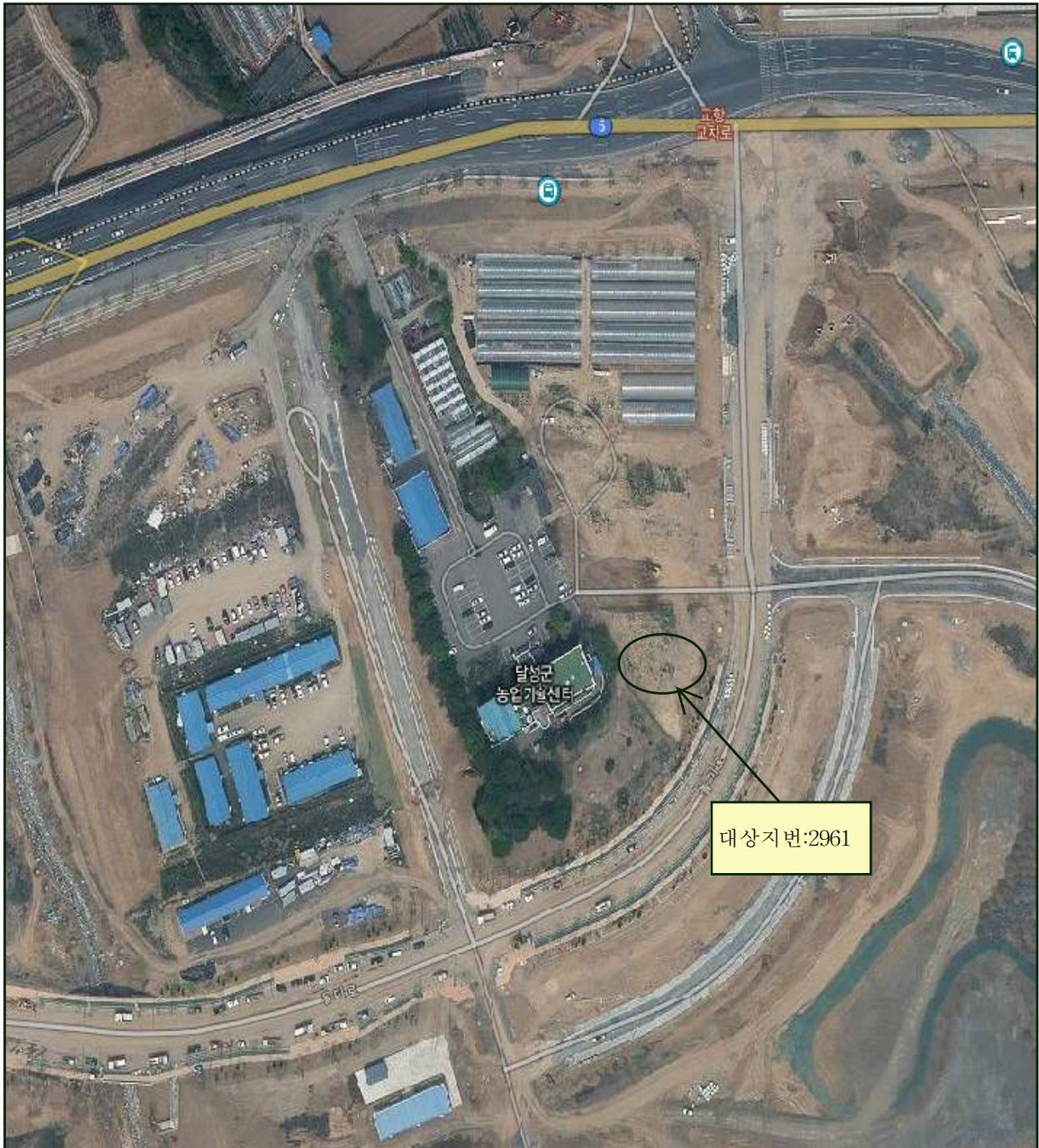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 250-4번지



위 치 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 대상지번 : 옥포면 교항리 2961번지(농업기술센터 내)



현 장 사 진

□ 대상지번 : 옥포면 교항리 2961번지(농업기술센터 내)



II. 검토의견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달성군 제2노인복지관 건립

기존의 우리군 노인복지관이 옥포에 위치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다사, 하빈 지역의 노인인구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수명도 늘어나면서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소외된 다사·하빈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달성군 제2노인 복지관 건립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내 체육시설 부지매입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는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개발되며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군에서 향후 예상되는 체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LH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용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비슬산참꽃제나 토마토축제 등 군단위 대규모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다양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화원명곡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도시관리계획에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공익 목적을 위한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지역 내에 남아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주와 협의를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이나 여가선용에 직접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 8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체육시설과 부대편의시설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도동서원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도동서원은 조선5대 서원에 포함되고 국가지정 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이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대구시에서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동 유교역사지구로 관광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동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21필지 건물3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향후 주차장 조성, 서원문화관 건립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동서원은 우리군의 훌륭한 자산이며 주변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군보건소 이전 · 신축**

군 보건소 이전 · 신축과 관련하여 5월 임시회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 보건소 이전대상 부지인 하리 253-2번지와 인접하고 있는 모서리 부분의 사유지 1필을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4층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군민 30만 시대를 대비한 보건복지 인프라 및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계획대로 청사가 신축되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건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는 농산물의 단순 생산을 넘어 농산물가공과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공동이용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공교육과 제품개발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2년에 걸쳐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지상1층으로 660㎡로 신축예정이며 차질없이 기술지원센터가 준공되고 운영되면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3. 제안이유

-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 8,250천원
 -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으로 설립
 - 출연금 산출 기초

구 분	산출금액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 기초자치단체 -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13,750천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11,000천원 - <u>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8,250천원</u>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5,500천원	8,250천원

- 붙 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기관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 대 상	○ 이사장: 박경배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9층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8,250천원(군비 8,2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6년 예산액</th><th rowspan="2">2017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td><td>2017년</td><td>0</td><td>8,250</td><td>8,250</td><td></td><td></td><td>8,25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2017년	0	8,250	8,250			8,250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2017년	0	8,250	8,250			8,250																	
출 연 필요성	○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 구축 ○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추진																							
근 거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사 업 부 의 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2014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평가부문	평가지표	지표내용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점수)
종합경영	리더십/전략	비계량	7등급평가	8	D
	윤리/책임경영	비계량	7등급평가	5	D
	고객만족	비계량	7등급평가	4	C
	사회적 기여	비계량	7등급평가	3	C
경영관리	조직/인사관리	비계량	7등급평가	5	B
	재무예산관리	비계량	7등급평가	5	B
	보수/노사관리	비계량	7등급평가	6	C
	경영정보관리	비계량	7등급평가	4	B
특정시책	정부3.0추진성과	비계량	7등급평가	3	C
	복리후생관리	비계량	7등급평가	3	B
주요사업	홍보사업	비계량	7등급평가	10	B
		계량 (㉔ 오프라인 홍보)	목표부여/편차	4	2.858
		계량 (㉕ 지역홍보센터 이용)	목표부여/편차	1	0.891
		계량 (㉖ 미디어 홍보)	목표부여/편차, 일반	5	3.105
	지역특산물 판매진흥	비계량	7등급평가	10	C
		계량	목표부여/편차	10	7.6
	지역진흥 역량강화	비계량	7등급평가	10	B
		비계량 (㉗ 연구컨설팅)	목표부여/일반	5	5.000
		계량 (㉘ 교육과정)	목표부여/편차	5	4.753
	평가등급			보통	

시행일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5.5.18 ~ 5.20 (행정자치부)	기금예치 절차 부적정	조치완료
	특산품판매장 결산소홀	조치완료
	센터 구조변경공사 제경비 정산 미이행	조치완료
	각종 신청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지양	조치완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 재단의 정관에 의거 각 지자체 별로 인구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하여 재단의 운영과 지자체의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8,250천원을 출연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한국지역진흥재단				전화번호	02-3496-2100	
					홈페이지	http://www.kolop.or.kr/	
설 립 근 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주 연 요 령	■ '07. 4. 26. 창립총회(제2차관 및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23명) ■ '07. 8. 23.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 (지역홍보센터 오픈) ■ '11. 7. 14. '지역정보포털'(oneclick.or.kr) 구축·운영 ■ '12. 7. 16. '지역명품숍'(localbest.co.kr) 쇼핑몰 공식 오픈 ■ '15. 6. 11.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신설						
이 사 (2016. 8. 현 재 25명)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박경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14. 3. 10. ~ '17. 3. 9.	
	상임이사	주용학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총괄위원)			'14. 12. 10. ~ '17. 12. 9.	
	이사(당연직)	황기연	행자부 지역공동체과장				
	이사(당연직)	김태균	서울 정책기획관				
	이사(당연직)	변성완	부산 기획관리실장				
	이사(당연직)	이상길	대구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이용철	인천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김종효	광주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이택구	대전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박성호	울산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이동혁	세종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황성태	경기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김명선	강원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서승우	충북 기획관리실장				
	이사(당연직)	김용찬	충남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최훈	전북 기획관리실장				
	이사(당연직)	박순종	전남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안병윤	경북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하병필	경남 기획조정실장				
	이사(당연직)	김정학	제주 기획조정실장				
	이사(위촉직)	김철래	강원 강릉시 부시장			'16. 8. 28. ~ '19. 8. 27.	
	이사(위촉직)	서정옥	울산 중구 부구청장			'16. 8. 28. ~ '19. 8. 27.	
	이사(위촉직)	주순선	전남 고흥군 부군수			'16. 8. 28. ~ '19. 8. 27.	
	이사(위촉직)	김기철	인천 옹진군 부군수			'16. 8. 28. ~ '19. 8. 27.	
	이사(위촉직)	송병권	경남 진주시 부시장			'16. 8. 28. ~ '19. 8. 27.	
주 기 요 능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 구축 ○한국지역진흥재단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 도모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추진						
최근3년간 예산현황 (백만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2016.10.31. 기준	자산	5,001
	예산액	3,210	3,783	4,539		부채	602
	지자체 지원액	2,600	2,600	2,600		자본	4,399

II. 검토의견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행정자치부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 **출자 또는 출연과 재정지원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에 제2조(재정지원)에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현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재단 정관에 각 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에 따르는 출연금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제안이유

-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7,522천원
-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조사·교육 전담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 운영
- 출연금 산출 기초

구 분	산 출 식	산출금액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116,809,293천원×0.015%	17,522천원

- 붙 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기관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 연 대 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여의도동)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7,522천원(군비 17,52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천원) <table>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 기간</th> <th rowspan="2">2016년 예산액</th> <th rowspan="2">2017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 원 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군비</th> <th>기타</th> </tr> <tr> <td>기관운영비</td> <td>2017년</td> <td>9,773</td> <td>11,039</td> <td>11,039</td> <td></td> <td></td> <td>11,039</td> <td></td> </tr> <tr> <td>주요사업비</td> <td>2017년</td> <td>5,739</td> <td>6,483</td> <td>6,483</td> <td></td> <td></td> <td>6,483</td> <td></td> </tr> <tr> <td>연구사업</td> <td>2017년</td> <td>3,723</td> <td>4,205</td> <td>4,205</td> <td></td> <td></td> <td>4,205</td> <td></td> </tr> <tr> <td>자치단체지원</td> <td>2017년</td> <td>2,016</td> <td>2,278</td> <td>2,278</td> <td></td> <td></td> <td>2,278</td> <td></td> </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기관운영비	2017년	9,773	11,039	11,039			11,039		주요사업비	2017년	5,739	6,483	6,483			6,483		연구사업	2017년	3,723	4,205	4,205			4,205		자치단체지원	2017년	2,016	2,278	2,278			2,278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기관운영비	2017년	9,773	11,039	11,039			11,039																																																			
	주요사업비	2017년	5,739	6,483	6,483			6,483																																																			
	연구사업	2017년	3,723	4,205	4,205			4,205																																																			
자치단체지원	2017년	2,016	2,278	2,278			2,278																																																				
출 연 필요성	○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신규 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근 거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사 업 서 건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세 발전 연구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2015년도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운영실적 평가

- 세무행정 이행의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고, 지방세 이론과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에 대한 기본틀의 제안과 탄력 세율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이사회 결산감사

- 2015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짐.
- 시·도 연구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가 필요함.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에 지방자체단체의 세수 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을 제안하고 점검하겠음.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A)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13,810	15,512	17,522	17,522	0	2,010
연구사업	2,762	3,723	4,205	4,205	0	482
자치단체지원사업	1,105	2,016	2,278	2,278	0	262
기관운영비	9,943	9,773	11,039	11,039	0	1,266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전화번호	02-2071-2723	
					홈페이지	http://www.kilf.re.kr	
설 립 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주 요 역	- 2011년 2월 설립등기, 2011년 4월 개원						
임원 (16.5.10 현 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 사 장	허남식	(전)부산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송광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16.02.28~2017.02.27	
	원 장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최 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구본근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홍범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016.02.28~2017.02.27	
	이 사	김돈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대호	경상남도 행정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신창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구청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이승복	전라북도 김제시 부시장			2016.02.28~2017.02.27	
	이 사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 부군수			2016.02.28~2017.02.27	
	이 사	박완규	중앙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조옥형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6.02.28~2018.02.27	
주요 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6,665
	예산액	8,315	7,518	8,406		부채	62
	지자체 지원액	7,712	7,198	8,276		자본	6,603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425			5,990		1,435	

II. 검토의견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한국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항에 명시함.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의무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발전기금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2호에 규정함.
 -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세발전기금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세 제도연구 및 교육 등이 향후 지자체의 세수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기에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지원과)

3. 제안이유

-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 410백만원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7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붙 임
1. 출연심의 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 대 표 : 서정길(비영리 공익법인, 2008. 10. 15 설립)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 기본자산 : 20억원(달성군 출연금) - 주요사업 · 시설운영 :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7개 수탁시설 · 모금사업 :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나눔 캠페인 · 배분사업 : 지정·결연 후원,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 가정 지원 · 기획사업 : 미래세대지원사업, 희망운동화 지원사업 등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1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6년 예산액</th><th rowspan="2">2017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tr><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tr><td>인건비</td><td>2017.01.01~12.31</td><td>225</td><td>241</td><td>241</td><td></td><td></td><td>241</td><td></td></tr><tr><td>경비</td><td>2017.01.01~12.31</td><td>124</td><td>159</td><td>159</td><td></td><td></td><td>159</td><td></td></tr><tr><td>시설지원사업</td><td>2017.01.01~12.31</td><td>10</td><td>10</td><td>10</td><td></td><td></td><td>10</td><td></td></tr><tr><td>재산조성비</td><td>-</td><td>24</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17.01.01~12.31	225	241	241			241		경비	2017.01.01~12.31	124	159	159			159		시설지원사업	2017.01.01~12.31	10	10	10			10		재산조성비	-	24	-	-			-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건비	2017.01.01~12.31	225	241	241			241																																												
경비	2017.01.01~12.31	124	159	159			159																																												
시설지원사업	2017.01.01~12.31	10	10	10			10																																												
재산조성비	-	24	-	-			-																																												
출 연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 - 모금 및 배분사업, 저소득층 지원 기획사업 등 수행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출연금 교부)																																																		

사 업 부 서 의 견 (총 평)	○ 2016년 경영실적(2015년 실적) 평가결과, - 지역 실정에 맞는 모금, 배분, 시설운영 및 기타사업 강화와 재단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A등급(9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 ○ 모금 및 배분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17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4.21~6.16)

- 2016년(2015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2점)

평가 분야	평가 배점(%)	평가 점수(%)
경영분야	30.00	25.91
사업분야	50.00	47.30
고객만족분야	10.00	9.68
자율성과지표	10.00	10.00
총점	100.00	92.89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외부 감사)

- 재무감사('16.6월) : 감사결과 처분 13건

(개선 1, 권고 1, 시정 4, 주의 7)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17년 출연금 410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기본재산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감소 보존

- 인건비 증가 및 시설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액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최종) (A)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C-A)
총 계	265	383	410	410	0	27
인건비	174	225	241	241	0	16
경비	91	124	159	159	0	35
시설지원	-	10	10	10	0	-
자산취득	-	24	0	0	0	-24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전화번호	617-9200	
					홈페이지	www.dswelfare.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8.10.15						
임원 (15.9.1 현 제)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대표이사 (비상임)	서정길	前달성군 안전행정국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김병용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김성제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김용범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김태호	큰나무집 식당 대표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진덕수	덕수복지재단 이사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전영희	가창어린이집 원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김상근	수경복지재단 이사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장창식	前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			2016.10.28~2018.10.27	
	비상임이사	권민균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16.10.28~2018.10.27	
	비상임감사	김대근	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			2016.10.28~2018.10.27	
	비상임감사	김광환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016.10.28~2018.10.27	
	주요기능	○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 복지시설 위수탁 사업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2015.12.31 기준	자산	2,348백만원
	예산액	1,149 백만원	1,069 백만원	1,077 백만원		부채	0.6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200 백만원	285 백만원	383 백만원		자본	2,348백만원

II. 검토의견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복지재단은 2008.10.15 설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개 부문으로 시설운영사업, 모금사업, 배분사업, 기획사업으로 구분되고, 배분사업으로는 지정·결연을 통한 후원, 저소득 가정지원을 추진하고, 시설운영으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니어클럽, 건가·다가통합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로 17개 수탁시설을 운영함
- 2017년 출연사업 예정금액은 410백만원으로 2016년도 383백만원보다 27백만원 증액된 계획이며 주된 증액 사유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요인이며
사업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6년 경영평가(2015년 실적)는 92점으로 A등급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이 인정되며,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 (출연금 교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3. 제안이유

-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500백만원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00백만원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달성군 출연금 500백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증자
 -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재발굴,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8,564백만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500백만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17년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17. 1~12월</td><td>500</td><td>500</td><td>-</td><td>-</td><td>50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7. 1~12월	500	500	-	-	500	
구 분	사업 기간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7. 1~12월	500	500	-	-	500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이 부족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됨.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의 견 (총평)	○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 전국 최고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SNS등을 활용한 홍보 수단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노력 필요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500백만원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00백만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출연액	2016년 예산액(최종) (A)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1,010	500	500	500	0	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1,010	500	500	500	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274	
					홈페이지	없음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04.04 법인성립년월일 : 2000.04.26						
임원 (15.9.1 현 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	달성군수(당연직)			2010.07.0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이○○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당연직)			2016.09.0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황○○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6.03.07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	자동차보험업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김○○	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신○○	자영업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김○○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이○○	달성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박○○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서○○	前 달성군의원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곽○○	前 유가농협장			2016.08.22~2020.08.21	
	비상임이사	박○○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2.12.24~2016.12.23	
	비상임이사	정○○	前 시의원			2011.06.21~2019.06.20	
	비상임감사	채○○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3.06.21~2017.06.20	
	비상임감사	신○○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6.07.01~재임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2015.12.31 기준	자산	8,221백만원
	예산액	954백만원	912백만원	930백만원		부채	-
	지자체 지원액	500백만원	1,010백만원	500백만원		자본	8,221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은 2000년 4월에 법인설립.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재)달성 장학재단 정관 제4조 (사업) 제2항에 규정

-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대상사업에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호에 규정.

「1.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 2017년도 출연사업비는 5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달성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장학금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 최근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기본재산의 증자를 위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6년 11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3. 제안이유

-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593백만원
 -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
 -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1,885백만원
 - '건전한 문화예술 선도'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특히 달성100대 피아노,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
 - (재)달성문화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출연 : 금2,000백만원
- ※ 연도별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2016년까지 총 5,000백만원)
- 2011 : 2,000백만원
 - 2013 : 1,000백만원
 - 2015 : 1,000백만원
 - 2016 : 1,000백만원

- 붙 임
1. 출연 심의요구서
 2. 사업부서 검토의견
 3. 출연기관 현황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4,478백만원 (군비 4,478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인력운영비	1~12월	308	504	504	-	-	504	-
기본경비	1~12월	136	89	89	-	-	89	-
강정대구현대 미술제	8~9월	350	400	400			400	-
달성 100대 피아노	10월	400	400	400			400	-
문화기획 지원	1~12월	250	200	200			200	-
달성스토리 텔링	1~12월	200	270	270			270	-
성악중창 페스티벌	12월	90	90	90			90	-
달성음악회	5~10월	150	150	150			150	-
달성문화 계간지	1~12월	80	80	80			80	-
달성군립 합창단지원	1~12월	65	65	65			65	
달성고문헌 수집사업	1~12월	50	50	50			50	-
아이조아 페스티벌	3~12월	-	120	120			120	-
달성문화10 비전수립	1~12월	-	60	60			60	-
달성깃발제		80	-	-			-	-
전설조형물 설치사업		239	-	-			-	-
기본재산 적립금		1,000	2,000	2,000			2,000	

출 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정책평가연구원, '16. 4. 21 ~ 6. 7)

- 2016년(2015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4.24점)

평가 분야	평가 배점(%)	평가 점수(%)
경영 분야	30.00	29.15
주요사업 분야	50.00	46.42
고객만족 분야	10.00	8.68
자율지표	10.00	10.00
총점	100.00	94.24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외부 감사)

- 지도점검('14년) : 예산회계검사 4건(시정 4)

- 재무감사('14년) : 감사결과 처분 12건(시정 8, 주의 4)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17년 출연금 4,478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593백만원

- 100대 피아노콘서트 등 자체사업비 1,885백만원

- 기본재산 적립금 2,000백만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결산액	2016년 예산액 (A)	2017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 (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액 (C-A)
총 계	3,039	3,480	4,612	4,478	△134	998
기관운영비	523	445	622	593	△29	148
인력운영비	428	309	521	504	△17	195
기본경비	95	137	101	89	△12	△48
자체사업비	1,516	2,035	1,990	1,885	△55	△150
강정대구현대미술제	214	350	400	400	-	50
달성 100대 피아노	350	600	450	400	-	△200
문화기획지원	108	150	200	200	-	50
달성스토리텔링	66	200	270	270	-	70
성악중창페스티벌	90	90	110	90	△20	-
달성음악회	148	150	180	150	△30	-
달성문화계간지	-	80	80	80	-	-
달성군립합창단지원	58	65	70	65	△5	-
달성고문헌수집사업	-	50	50	50	-	-
아이조아페스티벌	-	-	120	120	-	120
달성문화10비전수립	-	-	60	60	-	60
달성깃발제	50	80	-	-	-	△80
전설조형물설치사업	115	220	-	-	-	△220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 발굴에 관한 책자발간	45	-	-	-	-	-
달성군지 발간사업	272	-	-	-	-	-
기본재산적립금	1,000	1,000	2,000	2,000	1,000	1,00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715.1282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16.11.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김채한	매일신문 대기자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서규원	한국예총 대구지회 고문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차준용	달성문화원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성제	달성군자원봉사발전협의회회장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 교수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장혜이	서재휴먼시아어린이집원장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김상화	유도회 달성군지회장			2016. 7. 1 ~ 2018. 6. 30	
	비상임이사	신성진	달성군 정책사업단장			재임기간	
	감사	최삼태	세무사			2016. 7. 1 ~ 2018. 6. 30	
	감사	송종구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무현황 2015.12.31 기준	자산	4,613백만원
	예산액	2,992	4,781	5,424		부채	6,487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1,781	3,424	4,210		자본	4,606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문화재단은 2011년 5월에 설립등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설립 및 운영기준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달성문화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 출연금 계획을 살펴보면 총 4,478백만원으로
 - 공공운영비 등에 593백만원,
 -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1,885백만원
 -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00백만원입니다.최근 연도별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을 보면 2015년 10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20억원입니다.
- 주요자체사업으로는 달성100대 피아노,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운영, 달성음악회 등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예술의 보존과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재단의 출연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편성 방향

- ☐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행복한 복지·문화,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 기반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예측 가능한 세입추계를 최대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민 수혜적 균형재정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계획적 군정 발전을 위해 분야별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능력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함.

4. 예산총괄

1) 예산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총 계		584,000	100.00	
일반회계		575,500	98.54	
특별회계		8,500	1.46	
	기타특별회계	8,500	1.46	
	의료급여기금	499	0.09	
	폐기물처리시설사업	510	0.09	
	기반시설	114	0.02	
	농공지구관리	913	0.16	
	치수사업	6,464	1.11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584,000	540,000	44,000	8.15
일 반 회 계	합 계	575,500	524,500	51,000	9.72
	지 방 세 수 입	125,152	114,338	10,814	9.46
	세 외 수 입	23,664	26,155	△2,491	△9.53
	경상적 세외수입	18,224	18,998	△774	△4.07
	임시적 세외수입	5,440	7,157	△1,717	△24.00
	지 방 교 부 세	123,000	103,000	20,000	19.42
	조 정 교 부 금 등	33,210	20,250	12,960	64.00
	보 조 금	185,639	177,215	8,424	4.75
	국고 보조금 등	123,330	117,823	5,507	4.67
	사·도비보조금등	62,309	59,392	2,917	4.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835	83,542	1,293	1.55
특 별 회 계	합 계	8,500	15,500	△7,000	△45.16
	세외수입	86	239	△153	△64.08
	경상적세외수입	82	217	△135	△62.21
	임시적세외수입	4	22	△18	△82.47
	보 조 금	433	351	82	23.35
	국고보조금등	346	281	66	23.35
	사·도비보조금등	87	70	16	23.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81	14,910	△6,929	△46.47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84,000	540,000	44,000	8.15
일반회계	계	575,500	524,500	51,000	9.72
	일반 공공행정	30,340	31,245	△905	△2.90
	공공질서및안전	8,010	7,805	205	2.63
	교육	7,131	6,975	156	2.24
	문화 및 관광	46,864	34,139	12,725	37.27
	환경 보호	13,746	11,410	2,336	20.48
	사회 복지	165,164	157,345	7,819	4.97
	보건	31,015	10,185	20,830	204.51
	농림해양수산	50,555	39,310	11,245	28.61
	산업·중소기업	1,891	2,303	△412	△17.87
	수송 및 교통	88,787	90,094	△1,307	△1.45
	국토및지역개발	55,990	59,118	△3,128	△5.29
	예비비	5,097	7,816	△2,719	△34.79
	기타	70,910	66,755	4,155	6.22
특별회계	계	8,500	15,500	△7,000	△45.16
	환경 보호	510	7,400	△6,890	△93.11
	사회 복지	433	351	82	23.35
	국토및지역개발	7,257	7,376	△119	△1.61
	기타	300	373	△73	△19.62

■ 성 질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584,000	540,000	44,000	8.15
계		575,500	524,500	51,000	9.72
인 건 비		63,198	59,909	3,289	5.49
물 건 비		32,902	31,362	1,540	4.91
	일 반 운 영 비	24,506	22,275	2,231	10.02
	여 비	2,520	2,566	△46	△1.82
	업 무 추 진 비	653	646	7	1.10
	직무 수행 경비	1,914	1,851	63	3.40
	의 회 비	416	411	5	1.18
	재 료 비	2,117	2,108	9	0.43
	연 구 개 발 비	776	1,505	△729	△48.43
경 상 이 전		244,734	223,035	21,699	9.73
자 본 지 출		227,489	201,184	26,305	13.08
	시설비및부대비	212,783	179,242	33,541	18.71
	민간 자본 이전	9,070	14,732	△5,662	△38.4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49	1,996	△747	△37.4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90	836	54	6.52
	자 산 취 득 비	3,497	4,378	△881	△20.12
융자 및 출자		10	10	0	0
내 부 거 래		1,931	1,175	756	64.34
예비비 및 기타		5,236	7,825	△2,589	△33.09
특 별 회 계	계	8,500	15,500	△7,000	△45.16
	인 건 비	299	345	△46	△13.21
	물 건 비	188	212	△24	△11.22
	경 상 이 전	365	286	79	27.41
	자 본 지 출	1,045	1,623	△578	△35.61
	예비비 및 기타	6,603	13,034	△6,431	△49.34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5,400억원 보다 440억원(8.15%증)이 늘어난
5,84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5,245억원 보다 510억원이 증가된
5,755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55억원 보다 70억원이 감소된 85억원입니다.

■ 세입예산

-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에 있어
 - 자체수입 지방세 1,251억원으로 21.75%이며,
세외수입 237억원으로서 4.11%이고,
지방교부세 1,230억원으로 21.37%,
조정교부금등 332억원으로 5.77%,
보조금은 1,85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8억원으로 14.7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주민세는 전년대비 5억 5천만원이 늘어난 77억원
재산세는 전년대비 40억 7천만원이 늘어난 349억원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9억 9천만원이 늘어난 316억원
담배소비세 증감없이 10억원이 늘어난 110억원
지방소득세 383억원, 지난년도수입 15억 등
총 108억원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1,2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4억 9천여원이 감소된 2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억 2천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6억 5천만원,
사용료 수입이 49억원, 수수료수입이 44억원,
사업수입 9억 8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42억 6천만원,
이자수입이 30억 1천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0억원이 늘어난 1,23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 조정교부금등은 129억 6천만원이 늘어난 332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233억 3천여만원,
시·도비보조금등 623억원이 늘어난
총 1,856억 4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48억 3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로 5,045억 9천만원,
재무활동비로 20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8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분야별로는

-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0% 감소한 303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3% 증가한 80억원
- 교육분야에 2.24% 증가된 71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에 37.27%가 증가된 469억원
- 환경보호분야에 20.48% 증가한 137억원

- 사회복지분야에 4.97% 증가된 1,652억원
- 보건분야에 204.51% 증가된 310억원
-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28.61%가 증가된 505억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87% 감소된 19억원
-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5% 감소된 88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29% 감소한 560억원
- 예비비·기타 7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보수 419억여원, 기타직보수 15억여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0억원, 기간제근로자보수 108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49% 증가된 632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0.02% 증가와, 재료비 0.43% 증가와 연구개발비 48.43% 감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이 소폭 증가하여 15억여원이 증가한 329억여원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016년대비 217억여원이 늘어난 2,447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227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8.71% 늘어난 2,128억여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은 90억 7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억여원이 편성되었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억 9천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34억 9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9억여원, 기금전출금에서 10억 3천여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64.34% 증가된 19억 3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여원 감소하여 52억 3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자체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기획감사실	마을공동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00,000	300,000	p118
회 계 과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비	224,312	169,165	p172
	군청사 주차장 확장 및 주민쉼터 조성		863,000	p172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정비	60,000	60,000	p232
	장애인복지관 내진보강 공사	80,000	200,000	p235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50,000	p260
환 경 과	간이화장실 정비		397,300	p311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50,000	p321
	쓰레기 집하장(수거함) 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	100,000	p322
건 설 과	화원설화1리(8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350,000	p338
	화원 천내1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650,000	130,000	p338
	화원 설화리(628번지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700,000	p338
	화원 명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000	p338
	화원 설화리(891번지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600,000	p338
	논공 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600,000	p338
	논공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20,000	p338
	논공 금포1리 새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900,000	p339
	논공 삼리2리 안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450,000	p339
	논공 북1리(소로)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500,000	p339
	논공 삼리3리(국도옆)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500,000	p339
	다사 매곡리(다사중학교~다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p339
	다사 세천리(세천교회 주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350,000	p339
	다사 세천리 22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450,000	230,000	p339
	다사 세천리 택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100,000	p340
	다사 달천리 123-2~10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600,000	p340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500,000	p340
	다사 문산리 463~396-1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650,000	p34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건 설 과	다사 세천리 1025번지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850,000	p340
	다사 문양리 593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000,000	p340
	가창 내주리(마을회관옆)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	950,000	p341
	가창 삼산리(수점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p341
	가창 단산리(샛터)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800,000	p341
	가창 삼산리(본동)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0	400,000	p341
	가창 행정1리(소3-행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750,000	p341
	가창 주리~중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	2,420,000	p342
	가창 단산리(소2-중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950,000	p342
	가창 오2리 19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500,000	p342
	가창 행정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00	p342
	하빈 현내1리(샛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p342
	현풍 중리(학산아파트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200,000	p343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100,000	100,000	p343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장기미집행 보상	200,000	300,000	p343
	현풍 오산~원교간(군도1호선) 도로 선형 개량	837,000	400,000	p343
	옥포 본리2리(대방)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150,000	p343
	옥포 강림2리(공단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200,000	p343
	현풍휴게소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		400,000	p343
	구지 예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00	120,000	p344
	현풍 상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p344
	현풍 상1리(향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p344
	구지 창리(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00	p344
	옥포 강림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00	150,000	p344
	옥포 강림리(보금자리주택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0	1,250,000	p345
	현풍 부4리(경림빌라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45
	현풍 중3리(성창빌라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45
	구지 목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250,000	p345
	구지 창리(어린이공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750,000	500,000	p345
	하빈 감문2리(방앗간앞)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00	700,000	p34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건 설 과	옥포본리1리(중양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000	200,000	p345
	옥포 본리1리(국도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250,000	p346
	가창 주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	950,000	p346
	논공 우방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400,000	p346
	옥포 교항1리(13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550,000	p346
	옥포 강림1리 강림3길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	650,000	p346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050,000	p346
	옥포 신당리(신당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700,000	p346
	옥포 교항1리 교항5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1,350,000	p347
	옥포 신당리(신당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800,000	p347
	현풍 중1리(돌섬윗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400,000	p347
	현풍 부1리(우성하이츠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550,000	p347
	하빈 대평1리(대평교회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950,000	p347
	하빈 현내3리(하빈농협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000	600,000	p347
	하빈 현내1리(하빈천주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450,000	1,100,000	p347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100,000	p348
	하빈 현내2리(하빈로94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450,000	550,000	p348
	구지 가천리 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900,000	p348
	구지 창리 40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650,000	p348
	구지 창리 58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000	110,000	p348
	현풍 성하2리(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	600,000	p348
	경부고속도로(하빈)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40,000	250,000	p349
	화원 천내리(주원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900,000	p349
	화원 천내리(화장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900,000	p349
	화원 천내리(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p349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750,000	p349
	옥포 기세리(소로3류-옥14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350,000	p350
	화원 설화리(803-9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0
	화원 본리4리(4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건 설 과	화원 성산리(연세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800,000	p350
	다사 세천리(세천마을회관옆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30,000	p350
	가창 대일리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0,000	p351
	가창 삼산~우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2차분)		200,000	p352
	가창 우록리(본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2
	옥포 교항1리 1226번지선 외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4
	현풍 중1리(영재어린이집 옆 외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5
	현풍 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5
	현풍 상1리(현풍향교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00	p356
	구지 고봉~가천간(군도17호선) 도로확장		150,000	p356
	다사 문양리 문양역 진입도로 확포장		100,000	p357
	하빈 현내2리(하빈교회옆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p357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개설		2,500,000	p357
	가창 냉천리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	p357
	미불용지 보상비	500,000	500,000	p358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000	1,000,000	p358
	도로 긴급보수비	700,000	700,000	p358
	도로굴착복구	2,000,000	2,000,000	p359
	현풍자모~구지도동간(군도1호선) 도로선형개량	400,000	1,000,000	p359
	유가 초곡리 도로확포장		1,000,000	p359
	현풍 대1리 도로정비		300,000	p359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2,000,000	p359
	화원 성산리(삼주아파트) 인도정비		200,000	p360
	현풍 상2리 도로확장		100,000	p360
	유가 가태1리(431-1번지선) 교량확장 재가설		300,000	p360
도 시 과	가창 헐티로 배수로정비		100,000	p361
	옥포 기세~반송간 인도정비		1,200,000	p361
	유가 용금공단내 도로정비		300,000	p361
	유가 초곡리 마을도로 확포장		800,000	p361
	하수시설 편입토지 보상	100,000	100,000	p369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도 시 과	화원읍 명곡리(명천로)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510,000	p369
	논공읍 달성1차산업단지내 긴급보수구간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1,470,000	p370
	하빈면 묘1리(묘동길) 하수관거 정비공사		130,000	p370
	현풍면 중4리(현풍동로12길) 우수관거 정비공사		100,000	p370
	하수도 긴급 보수	200,000	200,000	p370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00,000	300,000	p370
	저수지 준설	100,000	100,000	p370
	미지급(미불)용지 보상		200,000	p370
	화원 본리리(966번지선 외 1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600,000	p371
	논공 노이1리(새창골) 농로확장공사	150,000	150,000	p372
	논공 상1리 농로개설공사	100,000	150,000	p372
	논공 삼리리 삼리들 중앙농로확장		500,000	p372
	논공 금포리(809번지선 외 1개소) 간이양수장 및 교량 설치공사		180,000	p372
	논공 위천리(467-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250,000	p372
	다사 매곡리(1137번지선 외 1개소) 암반관정 설치공사		180,000	p372
	다사 문양리(산14번지선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900,000	p372
	다사 문양리(814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250,000	p373
	가창 우록2리(819번지선외3개소) 농로개설		1,200,000	p373
	가창 대일1리(470번지선 외 2개소) 농로개설공사		400,000	p373
	가창 주2리(601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300,000	p373
	가창 행정1리 농로개설공사		100,000	p373
	가창 단산리(783번지선 외 6개소) 농로 및 구거 정비공사		610,000	p374
	하빈 대평1리(253-1번지선 외 2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496,400	p374
	하빈 하산2리(740번지선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320,000	p374
	하빈 봉촌1리(11-1번지선 외 3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000	p374
	옥포 김홍3리(1482번지선) 농로정비공사	150,000	150,000	p374
	옥포 교항1리(900번지선 외 3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650,000	p375
	현풍 대1리(십이정려각옆) 농로확포장공사	100,000	250,000	p375
	현풍 지1리(1136번지선 외 1개소) 농로확포장공사		400,000	p37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도 시 과	현풍 오산2리(854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150,000	p375
	유가 양1리(381번지선 외 1개소) 농로확포장공사		500,000	p375
	유가 양리(35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00,000	p376
	구지 응암리 농로개설공사		300,000	p376
	구지 고봉리 농로포장공사(733번지)		120,000	p376
	구지 평촌1리(391번지선 외 1개소) 농로확포장공사		220,000	p376
	구지 가천리(63번지선 외 2개소) 용배수로 정비공사		450,000	p376
	농로 및 용수로 유지보수		300,000	p376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		100,000	p377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9개읍면)		320,000	p379
	논공 국민은행 ~ 평화산업외 1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300,000	p379
	다사 왕선주유소 ~ 다사초등학교 가로등 교체공사		150,000	p379
	현풍 IC주유소 ~ 달성경찰서 가로등 교체공사		150,000	p379
	화원 본리택지지구내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100,000	p379
	가창 용계리 ~ 팔조령터널외 1개소 가로등기구 교체 및 보안등 설치공사		250,000	p379
	노후 보안등 보수공사(폴형,취부형)		300,000	p379
	공원등 보수공사	150,000	150,000	p379
	절전형(LED)보안등 교체공사	1,500,000	1,300,000	p379
	양.배수장 유지관리	200,000	190,000	p381
	암반관정 유지관리	100,000	100,000	p381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9,000	468,000	p381
	하산배수장 제진기 제작구입설치		900,000	p381
	하리배수장외2개소 원격감시반 제작구입설치		150,000	p381
	본리배수장 배수펌프 설치공사		120,000	p381
	수리양수장 보수공사		100,000	p381
안전방재과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비(읍면)	400,000	400,000	p387
	마을회관 30개소 자동음성통보 단말기 구입 설치	120,000	120,000	p389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86,000	p390
	방범CCTV설치		500,000	p393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안전방재과	달성경찰서 상황실간 연계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80,000	p393
	수문 점검 및 보수	200,000	350,000	p393
	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	350,000	350,000	p393
	환경 정비	400,000	1,000,000	p394
	하천제방응급복구비	150,000	150,000	p394
	하천 기성제 정비	100,000	100,000	p394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91,448	p394
	진천천 재해예방사업		129,655	p395
	낙동강변 다목적도로 건설사업	3,000,000	4,000,000	p397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500,000	800,000	p397
	논공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00,000	p397
	다사 이천리 이내소하천 정비		150,000	p397
	가창 용계리 용계천 정비		300,000	p397
	가창 오2리 312번지선 하천정비		300,000	p397
	가창 우록리 501번지선 하천정비		400,000	p398
	유가 가태리 가태소하천 호안정비		400,000	p398
	달성보~달성공단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정비		60,000	p398
건 축 과	역사路 문화路 사문진 가는길 가로경관 개선		700,000	p406
	빛이 아름다운 테크노폴리스路 조성	300,000	300,000	p406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정비	38,000	50,000	p407
교 통 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110,000	p41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단가계약)		200,000	p417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단가계약)		100,000	p417
	무단 횡단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100,000	p417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		100,000	p417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단가계약)		70,000	p417
	횡단보도 보행자 조명시설 확충사업		50,000	p418
	선 및 횡단보도 정비(단가계약)		280,000	p418
	교통시설물 긴급복구		100,000	p418
	교통심의 이행 등 교통체계개선 용역		50,000	p418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교 통 과	미래전략사업부지 주차장 조성		700,000	p418
	다사 문양리 공영주차장 조성		750,000	p419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CCTV 등)	200,000	120,000	p419
공원녹지과	아름다운 달성만들기 사업	1,500,000	900,000	p426
	녹지공간(하천변, 관문지역, 관광도로변 등) 조성	300,000	800,000	p427
	수목 전정	200,000	200,000	p428
	지장수목 이식 및 보식	50,000	100,000	p428
	조경지 긴급보수	100,000	100,000	p428
	관광지 및 가로변 꽃길, 꽃단지 조성		600,000	p429
	꽃조형물 설치		200,000	p429
	시설물 긴급보수		150,000	p430
	공원 내 녹지관리(풀깎기 등)		50,000	p430
	화원동산 관리 및 보완	300,000	300,000	p430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	3,250,000	1,450,000	p431
	어린이공원 정비(3개소)	400,000	600,000	p431
	옥연지 송해공원 조성	3,000,000	1,900,000	p431
	어린이공원 식재보완(10소개)		50,000	p431
	등산로 신설 및 정비	300,000	300,000	p434
	둘레길 보완사업	800,000	500,000	p436
	산림욕장 조성	300,000	400,000	p437
	휴양림 시설물 긴급보수 및 정비	200,000	887,620	p437
	보호수 및 보호림 정비	100,000	120,000	p449
	참꽃군락지 정비	150,000	150,000	p451
정책사업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7,033,000	2,300,000	p460
	비슬산 임도 정비공사		700,000	p460
	비슬산 숲속캠핑장 및 수송시설 관련 유지보수		100,000	p461
	부강정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0,000	p461
	비슬산 천왕봉 문화재 시·발굴		100,000	p461
	비슬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용역		500,000	p461
경 제 과	공설시장 유지보수		50,000	p469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비고
경 제 과	현풍공설시장 하천변 주차장 조성사업		1,000,000	p469
문화체육과	달성문화센터 LED조명등 교체사업	71,000	100,000	p484
	달성 군민체육관 증개축사업	4,750,000	5,685,000	p491
	테크노폴리스 내 체육시설 부지 매입		13,200,000	p491
	다사(매곡) 테니스장 조성		670,000	p491
	다사 축구장 천연잔디 조성		300,000	p491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도로시설 개선		250,000	p492
	옥포 신당 게이트볼장 태양광시설 설치		220,000	p492
	화원명곡체육공원내 잔여필지 매입		1,400,000	p492
	기타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	200,000	250,000	p492
관 광 과	피아노 계단 및 피아노 설치		50,000	p497
	마비정 벽화마을 벽화 조성 및 유지보수		50,000	p497
	마비정 벽화마을 초가지붕 교체공사		50,000	p497
	마비정 전망 조형물 설치		100,000	p498
	사문진역사공원 시설물관리		50,000	p499
	사문진 및 강정보 수상이용시설 관리		50,000	p499
	한국잼버리 후적지 조성공사(기본및실시설계)		500,000	p499
	문화재 긴급보수비	220,000	200,000	p500
보 건 과	보건지소,진료소 옥상 방수 공사(하빈,음리,한정)		60,000	p540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건축공사비		18,689,400	p540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1,750,000	p540
농촌지도과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100,000	p579

○ 읍·면예산의 경우

- 읍·면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읍장은 30만원이 증액되어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으로 비교증감이 없으며,
-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읍은 3억, 면은 2억 5천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청사관리 등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화원 46억여원, 논공 35억여원, 다사 48억여원, 가창 23억여원, 하빈 22억여원, 옥포 25억여원, 현풍 25억여원, 유가 27억여원, 구지 24억여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5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70억원이 감액된 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천 7백만원이 증가된 4억 9천 8백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및구료비(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요양비지원 등)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억 1천만원이 편성되고,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4천만원이 감소된 64억 6천만원으로 하천정비에 62억 3천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9억 1,300만원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유지보수에 5천만원, 폐수처리비 지원에 1천 8백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2017년도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영국의 EU탈퇴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병존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체납세 일제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동안 군 세외수입 수입원으로 들어온 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 사문진 주막촌 운영과 유람선 이용료 등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일정부분 감액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 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대비 주민안전 인프라부문과 지역 개발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최근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함께 관내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라 재산세가 40억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세는 전년대비 9.46%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19.4%, 64.0%로 상당폭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7%로 소폭 상회하는데 그쳤습니다.

○ 세출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28.7%로 가장 비중이 많으며, 수송 및 교통 예산이 15.4%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9.7%이고, 농림해양수산업이 8.8%, 문화 및 관광이 8.1%, 일반공공행정이 5.3% 순입니다.

○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인해 보건예산이 204.5% 증가했으며, 문화 및 관광 예산이 37.3% 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업이 28.6% 증가했고 사회복지 예산이 5.0% 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예산($\Delta 2.9\%$)과 산업 및 중소기업($\Delta 17.8\%$), 수송과 교통($\Delta 1.4\%$), 국토및 지역개발($\Delta 5.3\%$)은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의 절차이행에 노력하였으며 사전절차에 누락된 대상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복지와 건설도시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배정되었으며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과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감당하며 창조경제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원하고 사회기반 및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소에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으며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액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지원 근거에 맞게 내실있게 지원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성과 등을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17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구 분	편성액	한도액
지방보조금(계)	8,905백만원	45,9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3,620백만원	(※ 한도액 : 국시비보조금과 지방비부담분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예산만 해당)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456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841백만원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84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3,104백만원	

-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분석하여 사업의 형평성,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증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이 개선된 내용은 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억제하되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련행사는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행사관련 4개 예산과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총액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회계이며 우리군에는 5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는 세출예산 사업내용이 전액 예비비로만 편성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언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기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

3. 기금의 개요

(1) 기금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어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함.

(2) 운용방침

-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 강화
- 사회단체 중복지원 등 선심성 용도 집행 통제

(3) 기금의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 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지원과	
노인복지 기금	1999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 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기금	2003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 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과	
식품진흥 기금	2001	식품위생수준 및 국민영양 수 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진흥법」 제8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 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전방재과	
체육진흥 기금	1999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 흥 조례 제10조	문화체육과	
농업인 조직육성 기금	1999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 보급 및 복지농촌건설에 기여 하고자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 영조례	농촌지도과	

(4)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기타	계	비용자 성사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10,509,104	1,030,652	39,300	9,196,159	83,367	129,026	10,509,104	966,840	100,000	9,362,064	80,200
자활기금	905,448			851,427	10,395	13,026	905,448		100,000	805,448	
노인복지	553,248			551,616	1,632		553,248			553,248	
장애인복지	559,773			558,891	882		559,773			559,773	
식품진흥	378,046		39,300	217,746	5,000	116,000	378,046	76,840		221,006	80,200
재난관리	6,324,527	1,030,652		5,240,665	53,210		6,324,527	880,000		5,444,527	
체육진흥	775,868			765,320	10,548		775,868	10,000		765,868	
농업인조직 육성	1,012,194			1,010,494	1,700		1,012,194			1,012,194	

(5)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16년도말 조성액①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계	9,196,159	1,312,945	1,147,040	9,362,064	165,905
자활기금	851,427	54,021	100,000	805,448	△45,979
노인복지	551,616	1,632	0	553,248	1,632
장애인복지	558,891	882	0	559,773	882
식품진흥	217,746	160,300	157,040	221,006	3,260
재난관리	5,240,665	1,083,862	880,000	5,444,527	203,862
체육진흥	765,320	10,548	10,000	765,868	548
농업인조직육성	1,010,494	1,700	0	1,012,194	1,700

(6) 기금별 주요내용

□ 자활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 2017년 주요사업

- 점포세 임대 용자 100,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 말 현재액	2016년도 말 현재액 [㉠]	2017도 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814,812	851,427	805,448	△ 45,979	

□ 노인복지기금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2017년 주요사업

- 예치금 553,248천원
- 경로당 신문구독,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지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 말 현재액	2016년도 말 현재액 [㉠]	2017년도 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대구은행	551,616	551,616	553,248	1,632	

□ 장애인 복지기금

○ 지원대상

- 관내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2017년 주요사업

- 예치금 559,773천원
-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및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예치금	농협	560,548	558,891	559,773	882	

□ 식품진흥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식품위생업자 및 관련 단체
-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 2017년 주요사업

- 모범음식점 지원 (90개소) 9,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관련 홍보물 등 3,000천원
- 제6회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지원 4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지정업소 대상 저염식 요리강습 7,000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합 계		202,786	217,746	221,006	3,260	
예치금	소계	202,786	217,746	221,006	3,260	
	대구은행	90,000	90,000	90,000	0	정기예금
	대구은행	112,786	127,746	131,006	3,260	보통예금

□ 재난관리기금

○ 지원대상

- 달성군 전 지역

○ 2017년 주요사업

- 재해예방 홍보(팜플렛, 현수막 등)제작 10,000천원
-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300,000천원
-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비 540,000천원
- 제설장비 구입 30,000천원, 예치금 5,444,527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5,150,379	5,240,665	5,444,527	203,862	
예치금	소계	5,150,379	5,240,665	5,444,527	203,862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대구은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대구은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대구은행	300,000	300,000	300,000	0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대구은행	1,350,379	1,440,665	1,644,527	203,862	
	대구은행	500,000	500,000	500,000	0	

□ 체육진흥기금

○ 지원대상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 유소년 축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종목 중점 육성
- 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 2017년 주요사업

- 지역 체육진흥 사업 : 10,000천원, 예치금 765,868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농협	763,750	765,320	765,868	548	

□ 농업인조직육성기금

○ 지원대상

- 4-H회원 등 관련단체, 농촌지도사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육성

○ 2017년 주요사업

- 예치금 1,012,194천원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	2017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 [㉠])	
예치금	농협	1,010,494	1,010,494	1,012,194	1,700	

(7) 종합검토의견

- 기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각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 2017년도 달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년도(2016년도)에 운용된 기금이 9개 기금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7개 기금이 운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조직육성기금 조례안이 폐지되어 2017.1.1 일자 시행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이번 정례회에 노인복지 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조례안이 폐지 신청 되었습니다.

○ 향후 우리군의 기금운용은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자활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모두 4개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낮아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기금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실정으로 구조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